



학교법인 광운학원 2024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 인	2 인
재적임원	8 인	2 인
참석임원	5 인	1 인

1. 일 시 : 2024년 8월 28일(수) 17:00

(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8월 20일)

2. 장 소 :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룸 (서울 강북구 삼양로 689 114동 3층)

3. 참석임원

- 이사(5인) : 조선영 이사장, 이종수 이사, 김기영 이사, 오승훈 이사, 김영만 이사
(불참 : 이종민 이사, 배일환 이사, 이향철 이사)
- 감사(1인) : 배홍기 감사 (불참 : 이동훈 감사)

4. 안 건

- 제2024-28호 : 법인 규정 제·개정(안)
 - 1)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보고
 - 2)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제정(안)
 - 3)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소속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 제2024-29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
- 제2024-30호 : 초·중등학교 202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에 관한 건
- 제2024-31호 : 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제2024-32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 제2024-33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및 폐지(안)
 -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3)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4)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 5) 다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6) 전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간서명			
-----	---	---	---

- 7) 교양교육 운영 규정 개정(안)
- 8)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9)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10)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 11) 장학규정 개정(안)
- 12) 직제 규정 개정(안)
- 13)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14)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제2024-34호 :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총원 분야 및 인원(안)
- 제2024-35호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 1) 2024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제청(안)
 - 2) 전임교원 면직 제청(안)
- 제2024-36호 :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 제청(안)
- 제2024-37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안건

5. 회의내용

□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개회 시간이 되어 이세원 간사가 참석 임원(이사 5인)을 보고하자, 조선영 의장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조선영 의장은 이세원 간사에게 전차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를 지시하자, 이세원 간사가 보고하다.

□ 제2024-28호 : 법인 규정 제·개정(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28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법인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	---	---	---

안 건	심의결과	시행일자
창학 9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폐지 보고	보고접수	-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학교법인 광운학원 및 소속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배홍기 감사 참석함.)

□ 제2024-29호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29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청의 이리천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건임을 설명하고, 진행경과를 설명하다.

김영만 이사는 면적 대비 손실보상액(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오승훈 이사는 손실보상액을 상회하는 매수 제안이 있을 경우, 매수 제안자와 거래에 제한이 없는 한, 매수 제안자와 거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법률 검토 및 횡성군청의 확인을 거쳐 추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참석이사 전원 반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2024-30호 : 초·중등학교 202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30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초등학교 및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025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	---	---	---

□ 제2024-31호 : 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31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중등학교 교원 임용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용사항		비고
				내용	일자	
남대문중학교	교장	이음표		명. 정년퇴직	2024.08.31.	
	교사	차경순		임. 교감 임기: 2024.09.01.-2026.08.31.	2024.09.01.	
광운인공지능 고등학교	교감	이한주		면. 교감	2024.08.31.	임기만료
				명. 평교사로 발령	2024.09.01.	
	교사	모상범		임. 교감 임기: 2024.09.01.-2026.08.31.	2024.09.01.	

□ 제2024-32호 :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조선영 의장은 제2024-32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세원 간사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이세원 간사는 광운대학교 교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결과 보고를 접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 정석재 기획처장, 전흥배 교무처장 입실함)

□ 제2024-33호 :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및 폐지(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33호 안건을 상정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정석재 기획처장은 광운대학교 규정 제·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간서명			
-----	---	---	---

김영만 이사는 다전공 의무화 및 전과제도가 우리 대학만의 특수성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석재 기획처장이 이미 많은 대학에서 시행 중으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임을 답변하다.

배홍기 감사는 인제니움학부대학, 참빛인재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명칭이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다.

천장호 총장은 인제니움학부대학, 참빛인재대학 명칭과 관련하여 교양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선정을 위한 배경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현재 일부 단과대학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과대학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명칭 변경 시 단과대학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명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안 건	심의결과	시행·폐지일자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부칙 참조)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원안가결	2024.08.28.
다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전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교양교육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부칙 참조)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장학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직제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부칙 참조)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2024.08.28.

※ 붙임1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간서명			
-----	---	---	---

□ 제2024-34호 :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총원 분야 및 인원(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34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총원 분야 및 인원(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김기영 이사는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봉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정년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석좌교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2 :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총원 분야 및 인원

□ 제2024-35호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제2024-35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2024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승진임용 제청(안), 전임교원 면직 제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붙임3 :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안)

□ 제2024-36호 :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추대 제청(안)

조선영 의장은 제2024-36호 안건을 상정하고 전홍배 교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지시하다.

전홍배 교무처장은 명예교수 추대 제청 후, 이전 명예교수 추대 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조선영 의장은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 안건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	---	---	---

□ 제2024-37호 :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

조선영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중 이종민 이사, 이항철 이사의 불참으로 김영만 이사와 오승훈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조선영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안건 제2024-35호(의원면직에 관한 건), 제2024-37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비공개 처리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

조선영 의장은 이상과 같이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18시 19분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	---	---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이사장 조 선 영 (서명) 

이 사 이 종 수 (서명) 

이 사 이 종 민 (서명) 불참

이 사 김 기 영 (서명) 

이 사 오 승 훈 (서명) 

이 사 김 영 만 (서명) 

이 사 배 일 환 (서명) 불참

이 사 이 향 철 (서명) 불참

감 사 배 흥 기 (서명) 

감 사 이 동 훈 (서명) 불참

2024. 8. 28.

간서명			
-----	---	---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2조(교육조직) 본 대학교에는 전자정보공과대학, 인공지능융합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 참빛인재대학, <u>인제니움학부대학</u>, 대학원,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단, 대학원,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및 기타 부속교육기관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p>	<p>제2조(교육조직) ----- ----- ----- -----, <u>인제니움대학</u>, ----- ----- ----- ----- ----- ----- ----- ----- -----.</p>	<p>·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인제니움학부대학 명칭 변경</p>
<p>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p> <p>① 각 대학의 <u>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u>은 [별표 1]과 같다.</p> <p>② 각 대학의 모집단위 편제를 <u>학과(학부)로</u> 모집한다. 학부로 모집할 경우 [별표 1]과 같이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p>	<p>제3조(학과(학부) 및 전공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의 <u>학과(학부) 및 전공의 편제와 입학정원</u>은 [별표 1]과 같다.</p> <p>② 각 대학의 모집단위 편제를 <u>학과(학부) 및 전공으로</u> 모집한다. 학부로 모집할 경우 [별표 1]과 같이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p>	<p>· '24학년도부터 '전공'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조 명칭과 입학정원표(별표)에 이를 반영</p> <p>· 상동</p>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1조(전공선택) 학생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전공선택) 학생은 입학 당시 모집단위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전공선택은 따로 정한다.	·자율전공학부 전공선택 조항 단서 신설
제21조의 2(전공변경) 총장은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u>모집단위내에서</u>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 제39조의 2의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과를 전공 선택할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 중 하나를 함께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이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의2(전공변경) ① 총장은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u>모집단위 내에서</u> 전공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전공변경은 따로 정한다. ② 제39조의2의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과를 전공 선택할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 중 하나를 함께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장이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조명 붙여쓰기, 항 분리 ·자구 띄어쓰기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과로 진입하지 않고 자율전공학부 소속으로 학기마다 주전공을 선택 및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단서로 신설하여 별도로 정함
제21조의 3(복학생전공단위배정) (생략)	제21조의3(복학생전공단위배정) (현행과 같음)	·조명 붙여쓰기
제21조의 4(전과) 총장은 전과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의4(전과) <삭제>	·조명 붙여쓰기 ·전공변경과 달리 전과는 별도의 전형이 이루어지므로 제21조(전공선택)의 하위조항이 아닌 별개 조항으로 독립하여 표기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2조 <삭제>	제22조(전과) 총장은 전과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2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의 삭제 조항인 '제22조'를 '제21조의4(전과)' 내용으로 개정
제25조의 2(납입금납입의무)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납입금납입의무) ----- ----- -- <u>납입금</u> 을----- -----.	·조명 붙여쓰기 ·자구 변경(현재 입학금 납부 제도 없음)
제3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업일수 1/4 이상 무계출결 석한 자 3. ~ 7. (생략)	제35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자구 변경 ·현재 해당 사유는 출석미달로 인한 성적 미부여(F부여) 사유로 제적사유는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함
제46조(이수학점) ① ~ ② (생략) ③ 특별강좌나 현장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이수학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강좌, 현장교육 및 학생창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학생창업 학사지원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창업학사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학생창업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에 학점 인정근거를 명시해 놓지 않아 학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p>칙에 학점인정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여 학점인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 <p>· 개정 규정명 조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p>
<p>제46조의 3(군복무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p>	<p>제46조의3(군복무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 ----- ----- ----- -----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p>	<p>· 조명 붙여쓰기</p> <p>· 군복무기간 중 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기별 균이러닝 개설강좌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학기당 3학점만 가능했던 학점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최대 인정 학점만 표기함</p> <p>(군복무기간중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므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없음)</p>
<p>제 4 절 전공, 다전공(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연계·융합전공</p>	<p>제4절 전공, 다전공(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u>연계전공</u>, <u>학생설계 융합전공</u>, 마이크로전공)</p>	<p>· 절 명칭 변경</p> <p>· 다전공 제도에 따른 신설 다전공 명시, 자구 조정</p>
<p>제49조(전공이수) ① 전공이수학점은 입학년도와 소속 학부(과)별</p>	<p>제49조(전공이수) ①----- -----</p>	<p>· [별표6] 개정</p>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로 [별표 6] 입학년도별/단과대학(학과)별 이수학점 안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은 소속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융합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별표 6]-----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2조(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연계·융합전공)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제52조(다전공 이수 및 운영) 다전공은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마이크로전공을 말하며, 다전공 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명칭 조정 · 학칙 49조의3에서 “다전공”의 종류를 명시 및 정의하였으므로 하위 조항에서는 해당 용어로 통합하여 명시
<p>제52조3(연계·융합전공)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해서는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p>	<p>제52조의3(연계·융합전공)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을 다전공에 모두 포함하여 별도 규정(다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다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 및 운영
<p>제62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50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를 받는다.</p> <p>②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에 평량평균 1.25 미만인 자와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p>	<p>제62조(학사경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에 평량평균 1.25 미만인 자와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단, 졸업예정학기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대상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성적불량제적으로 졸업을 못하는 경우를 예외적용할

간서명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p> <p>③ (대학, 학과(부,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 및 학과(부, 전공)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이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추후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전과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에 맞춰 다음 각 호와 [별표 1]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를 참고하여 변경된 학과(부, 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1. <u>인제니움학부대학을 인제니움대학으로</u></p>	

※ [별표 1], [별표 6] 생략

간서명			
-----	---	---	---

2025학년도 전반기 전임교원 초빙 총원 분야 및 인원

- 일반전임교원 : 11명 [9개학과(부), 10개분야]

학과(부)명	총원인원 (명)	총원 분야	비고
전자공학과	1	- 영상신호처리 분야 1명	
전자재료공학과	1	- 반도체(재료, 소자, 회로 등) 분야 1명	
소프트웨어학부	1	- 소프트웨어 전분야 1명(딥러닝 전공자 우대)	
소프트웨어학부 (JA교원)	1	- 소프트웨어 전분야 1명(프로그래밍 언어 및 분산클라우드 컴퓨팅 전공자 우대) (겸직학과 : 인공지능융합대학 정보융합학부)	
정보융합학부	1	- 소프트웨어 전분야 1명(빅데이터 및 AI보안 전문가 우대)	
로봇학부	1	- 인공지능 응용 또는 로봇 전분야 1명	
수학과(JA교원)	1	- 수리과학 전분야 1명 (겸직학과 : 인제니움학부대학 자율전공학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JA교원)	1	- 디지털콘텐츠 UX/UI 분야 1명 (겸직학과 : 참빛인재대학 게임콘텐츠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강의 가능자 SCI급 논문 우대
행정학과	1	- 정책학 분야 1명	
경영학부	1	- 빅데이터경영전공 분야 1명	
경영학부(JA교원)	1	- 빅데이터경영전공 분야 1명 (겸직학과 :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계	11		

- 특별전임교원 : 5명 [2학과 및 1대학, 2특수대학원]

소속	총원인원 (명)	총원분야	비고 (트랙)
참빛인재대학 금융부동산법무학과	1	- 금융법/부동산법 분야 1명	교육트랙 A
참빛인재대학 스마트전기전자학과	1	- 전기전자분야 1명	교육트랙 A
인제니움학부대학	1	- 인공지능(AI시스템 포함) 전분야 1명	교육트랙 B
교육대학원	1	- 심리치료교육 분야 1명	교육트랙 A
상담복지정책대학원	1	-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청소년·조직상담전공 분야 1명	교육트랙 A
계	5		

간서명			
-----	---	---	---

[붙임3]

광운대학교 교원 임용(안)

- 정교수 승진임용·정년보장 대상자 : 4명 (조건부 1명)

번호	학 과(부)	현 직급 (직종)	성명	현직 임용일	임용사항		
					직급	기간	일자
1	전자재료공학과	부교수 (일반전임)	하태준	2019.09.01.	교수	정년보장	2024.09.01.
2	화학공학과	부교수 (일반전임)	손희상	2019.09.01.	교수	정년보장	2024.09.01.
3	화학과	부교수 (일반전임)	김양래	2019.09.01.	교수	정년보장	2024.09.01.
4	법학부	부교수 (일반전임)	서의경 ^(주1)	2019.09.01.	교수	정년보장	2024.09.01.

※ (주1) 2024년 8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승진임용

-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 1명

번호	학 과(부)	현 직급 (직종)	성명	현직 임용일	임용사항		
					직급	기간	일자
1	로봇학부	조교수 (일반전임)	오정현	2019.09.01.	부교수	2024.09.01. ~ 2032.02.29. (7.5년)	2024.09.01.

- 외국인특별전임 교수 승진임용 대상자 : 1명

번호	학 과(부)	현 직급 (직종)	성명	현직 임용일	임용사항		
					직급	기간	일자
1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 (외국인특별전임)	이름랜드	2019.09.01	교수	2024.09.01. ~ 2027.02.28. (2.5년, 잔여 계약기간)	2024.09.01.

- 면직 대상자 : 9명

번호	소 속	직종	직급	성명	임용사항	
					내용	일자
1	전자정보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일반전임	교수	이건영	명. 정년퇴직	2024.08.31.
2	자연과학대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특별전임	부교수	이건준	명. 정년퇴직	2024.08.31.

간서명			
-----	---	---	---

번호	소 속	직종	직급	성명	임용사항	
					내용	일자
3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일반전임	교수	전보옥	명. 정년퇴직	2024.08.31.
4	경영대학 경영학부	일반전임	교수	김도형	명. 정년퇴직	2024.08.31.
5	인제니움학부대학	특별전임	부교수	노진서	명. 정년퇴직	2024.08.31.
6	인제니움학부대학	특별전임	부교수	이도남	명. 정년퇴직	2024.08.31.
7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일반전임	부교수		명. 의원면직	2024.08.31.
8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일반전임	부교수		명. 의원면직	2024.08.31.
9	참빛인재대학 금융부동산법무학과	특별전임	조교수		명. 의원면직	2024.08.31.

간서명			
-----	---	---	---